

# 경상대학 RC 장학생 선발 내규

제정일 : 2014년 10월 01일

개정일 : 2020년 09월 15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대학 RC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위원회)

- ① 장학과 관련된 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학장과 학부(과)장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RC장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행정팀장은 간사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제3조(RC장학금) RC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는 학비 감면 장학금으로써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등록금 납부 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학기말에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실용인재 장학금
- ② 한양브레이인 장학금(舊 성적장학금)
- ③ 학부리더십 장학금
- ④ 복수학위 장학금

제4조(장학금 신청의무) RC 장학생으로 선정되고자하는 학생은 장학별 신청의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5조(이중지급 금지)

- ① RC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리더십 장학금액이 등록금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 ③ 기타 이중지급 금지 조항은 본부 학생지원팀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실용인재 장학금

제6조(실용인재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은 생계지원 장학금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① 해당학기 국가장학 1차 또는 2차 신청
- ② 직전학기 10학점 및 평균평점 2.0 이상 이수
- ③ 학업연장자, 무등록복학자(휴학당시수혜자), 이중수혜 불가의 교내장학수혜자, 타 대학에서 해당학기에 전과한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실용인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배정) 실용인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심사결과 및 RC장학예산에 따라 지급대상과 장학금액을 정한다. 단, 타 장학과 이중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한양브레인 장학금

제8조(한양브레인 장학금) 한양브레인 장학금은 성적장학금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① 해당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 (2차 신청은 불허함)
- ② 직전학기 15학점 및 평균평점 3.5 이상 이수. 단, 현장실습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하며, 4학년은 12학점 적용.
- ③ 인정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영어성적표 제출(2학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 ③-1.공인영어성적은 아래 세 가지 시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TOEIC(한국토익위원회 주관 혹은 한양토익)
    2. TOEIC Speaking(한국토익위원회 주관)
    3. OPIc

[표1] TOEIC 성적 기준표

진급학년 및 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최소점수요건	550	600	650	700	700	700

[표2] TOEIC Speaking 성적 기준표

진급학년 및 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최소점수요건	Level 5			Level 6		

[표3] OPIc 성적 기준표

진급학년 및 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최소점수요건	IM Level 3					

③-2.공인영어성적의 인정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학기별 지정된 기한까지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학기 인정 유효기간 : 전전년도 1/1 ~ 전년도 12/31까지 취득성적

2학기 인정 유효기간 : 전전년도 7/1 ~ 해당년도 6/30까지 취득성적

※ 예시 : 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김한양 군이 3학년 1학기 한양브레인 장학을 받기 위해서는,

(1)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1월~12월중 진행됨. 2차 신청은 불가!)

(2) 2020년도 2학기 15학점 이상, 3.5 이상 성적 취득

(3)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내, 진급하는 학년/학기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TOEIC 기준 650점 이상)

④ 기업가정신과관계역량(ECO1022) 과목 이수(2학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 2017학번부터 적용)

⑤ 회계세무학과의 경우 제8조 ③항 및 ④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외국인학생의 경우 제8조 ①항, ③항, ④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한국어능력 졸업요건이 필수인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 제9조(한양브레이인 장학생 선발)

① 한양브레이인 장학생은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학년별 석차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② 해당 석차의 학생이 제8조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여분이 발생할 때 각 학부(과)의 장학금 지급 비율 내에서 후순위 석차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한양브레이인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부터 장학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제10조(한양브레이인 장학생 배정) 한양브레이인 장학의 학과별, 학년별 인원 및 금액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학부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2.학년 별 석차 2~4등 : 등록금의 50%

3.학년 별 석차 5~9등 : 등록금의 30%

#### ② 경영학부

1.학년 별 석차 1~2등 : 등록금의 100%

2.학년 별 석차 3~7등 : 등록금의 50%

3.학년 별 석차 8~12등 : 등록금의 30%

#### ③ 보험계리학과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2.학년 별 석차 2등~3등 : 등록금의 50% (2020학년도 1학년 이후부터 적용)

#### ④ 회계세무학과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⑤ 장학금액은 제10조 ①~④항에서 규정한 본인의 석차로 결정하되, 학년별 배정등수 이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30%로 한다. 단, 타 장학 이중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동점자 처리) 한양브레이인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 처리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더 많은 학생

② 전공과목 평점이 더 높은 학생

③ 어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

④ 이수과목 최종점수의 합계가 더 높은 학생

## 제4장 학부리더십 장학금

제12조(학부리더십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경상대학 내 학생회 활동 장학금으로 다음의 요

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① 해당학기 국가장학 1차 또는 2차 신청
- ② 직전학기 10학점 및 평균평점 2.0 이상 이수
- ③ 기업가정신과관계역량(ECO1022) 과목 이수. 단, 회계세무학과는 미적용 (2학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 2017학번부터 적용)

제13조(학부리더십 장학생 선발) 학부리더십 장학생의 선발 및 금액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타 장학 이중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경상대학 학생회 회장 : 등록금 70%
- 2.경상대학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 50%
- 3.경상대학 학생회 간부 : 등록금 10%
- 4.각 학과 학생회 회장 : 등록금 30%
- 5.각 학과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 10%

## 제5장 복수학위 장학금

제14조(복수학위 장학생 선발)

- ① 본 대학 복수학위 장학금은 경상대학과 복수학위과정이 체결된 해외대학으로 파견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 ②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0%를 파견학기(최대4개 학기) 동안 지원하되, 타 장학 이중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파견된 학생이 파견된 학교에서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대학은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학생지원팀 장학금 지급 규정과 시행세칙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경상대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14. 10.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6. 4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4. 3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2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8.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2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5. 4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9. 1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년 1학기에 한하여 한양브레인 장학생 선발에서 공인영어성적 제출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